

## 전기에너지신기술연구소 규정

**제 1조 (명칭)** 본 연구소의 명칭은 호서대학교 부설 전기에너지신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 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전기관련 신기술 연구를 통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과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(위치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안에 둔다.

**제 4조 (사업내용)** 본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(개정 2015.09.01)

1. 전기에너지 신기술의 학술적 연구
2. 국내외 관련기관의 학술 및 기술 교류
3. 산학협동 연구 및 교육 사업
4. 학술세미나 및 기술서 발간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 5조 (구성)**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(개정 2015.09.01)

1. 소장
2. 감사
3. 운영위원회

**제 6조 (소장)**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9.01)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(조삭제,개정 2015.09.01)

**제 7조 (감사)**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② 감사는 매년 2월말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③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의 당해연도 예·결산
2. 연구소 당해연도 사업의 타당성
3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**제 8조 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 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(신설 2015.09.01)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 9조 (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

다. (개정 2015.09.01)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 (신설 2015.09.01)

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 개정 발의
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 (신설 2015.09.01)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0조 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 (개정 2015.09.01)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**제11조 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.)

## 제 5 장 보 고

**제12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## 제 6 장 보 칙

**제13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(신설 2015.09.01)

**제14조 (운영세칙)**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정한다. 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
### 부 칙

**제 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 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전기에너지신기술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